

제 14 회 구미시의회 (임시회) 집회결과

건 명	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(안) 의결의 건				
집 회 기 간	1992. 4. 6 (1일간)				
의 결 일 시	1992. 4. 6	재 적 의 원	22 명	출 석 의 원	21 명
의 결 사 항 ○ 의결결과 : 수정의결 ○ 수정이유 : 폐기물 수거료 요율을 14.3% 인상 시킬경우 타시군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나, 정부의 불가안정 시책의 공공요금 인상폭 10% 이내 억제시책에 위배될뿐 아니라 시민들의 이해 부족에 따른 거부반응이 있을것 같아 현행보다 평균 9.5% 인상조정 하였음. ○ 첨 부 : 1.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(안) 1 부 2. 개정안대 수정안 대비표 1부. 끝 *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 1992 년 4 월 9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					
의 결 시 찬 반 표 시	찬 성	18 명	반 대		기 권 2 명

구미시 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(안)

구미시 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(안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○ 제27조 제1항의 "제10조 제5항"을 "제13조 제4항"으로 한다.

○ 제27조 제1항 2호 가목중 "별표 1"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폐 기 물 수 수 료 요 인 표

【별표 1】

(개 정)

(단위 : 원)

종별 및 등 급		부 과 대 상	부 과 기 준		수 거 요 금	
			건 물 면 적 (㎡)		개 정 안	비 고
제 2종		일시적 다량오물	톤 당		3,070	
제 3 종	1 등 급	은행,기업체(공장 제조업),창고,병원 공장,극장,음식장, 도매시장 및 이와 유사한 업소	660㎡초과 165㎡마다		1,350	
			건물면적 660㎡ 이상		9,150	
			" 660㎡ 미만		7,400	
			" 495㎡ 미만		6,050	
			" 330㎡ 미만		4,450	
			" 165㎡ 미만		3,350	
			" 99㎡ 미만		2,650	
	2 등 급	관공서,학교,공공 시설,교회,후생시 설,공공조합 및 이와 유사한 업소	660㎡초과 165㎡마다		940	
			건물면적 660㎡ 이상		4,500	
			" 660㎡ 미만		3,880	
			" 330㎡ 미만		2,940	
			" 165㎡ 미만		1,780	
	3 등 급	의료업소,식품접객 업소,숙박업소,유기 장,욕탕,이·미용업 소,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업소	330㎡초과 165㎡마다		960	
			건물면적 330㎡ 이상		5,560	
" 330㎡ 미만			4,800			
" 165㎡ 미만			3,640			
" 99㎡ 미만			2,990			
" 66㎡ 미만			2,460			
" 33㎡ 미만			1,600			
" 16.5㎡ 미만			850			
4 등 급		49.5㎡초과 16.5㎡마다		320		
		건물면적 49.5㎡ 이상		2,860		
		" 49.5㎡ 미만		1,900		

종별및 등 급		부 과 대 상	부 과 기 준		수 거 요 금	
			건 물 면 적 (㎡)		개 정 안	비 고
제 3 종	4 등 급	점포(시장점포및 노점포함) 백화점,슈퍼마켓, 연쇄점 (단,노점은 부지면적)	건물면적	33㎡미만	1,270	
			"	16.5㎡미만	1,060	
			"	9.9㎡미만	630	
			"	6.6㎡미만	530	
	5 등 급	세차장,주차장,주유 소, 실외 체육시설 (테니스장,골프연습 장 포함),하차장,고 물수집장,부력공장 및 이와 유사한 업소	660㎡초과	330㎡마다	950	
			건물면적	660㎡이상	6,570	
			"	660㎡미만	4,870	
			"	330㎡미만	2,440	
			"	165㎡미만	1,270	
제 4 종		공동주택(아파트,다 세대주택,연립주택 등)	건물면적	66㎡미만 (20평 미만)	5,500	매년인건비 상승, 작업 여건에 따라 20%범위내에 서 쌍방향의 에 의하여 가산 적용 할수 있다. (신설)
			건물면적	66㎡이상 (20평 이상)	5,800	
			건물면적	66㎡이상 (30평 이상)	6,200	
			건물면적	132㎡이상 (40평 이상)	6,500	
	4	일반가정	재산세	100,000원 이상	350	
				80,000 ~ 100,000원	340	
				60,000 ~ 80,000원	330	
				50,000 ~ 60,000원	320	
				40,000 ~ 50,000원	310	
				30,000 ~ 40,000원	290	
				20,000 ~ 30,000원	280	
				10,000 ~ 20,000원	270	
				5,000 ~ 10,000원	140	
				2,500 ~ 5,000원	120	
				2,500원 미만	100	
				주민등록상 인구 1인	80	

종별및 등 급	부 과 대 상	부 과 기 준	수 거 요 금	
		건 물 면 적 (㎡)	개 정 안	비 고
제 5 종	냉장고,에어콘,세탁기,대형가구(장농,케비넷,자전거쇼파,오락기,이와 유사한대형폐기물	1 개당	3,000	사용주가 운반처리하는 요율의 ½로한다. (신설)
	T.V,전자렌지,각종곤로,선풍기등 각종가전제품류,책상 의자,싱크대,쌀통등 중형폐기물	1 개당	2,000	운반처리 1 회로한다. (신설) 사용가능제품은 처리비의 ½를 가산한다. (신설)
	문짝,보통의자등 소형폐기물	1 개당	2,000	(신설)

주) 1. 재산세액은 건물분 재산세액임.

다만, 폐기물 수거료 부과 당시 재산세액이 없을시는 전기분 부과당시 "과표"에 의거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에 부과한다.

2. 제1종, 제2종은 수거료액. 제3종, 제4종은 월료액임.

3. 제1종 수거요금중 10원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.

개 정 안 · 수 정 안 대 비 표

[별표 1]

(단위 : 원)

종별및 등 급	부 과 대 상	부 과 기 준		수 거 요 금		비 고
		건 물 면 적 (㎡)		개 정 안	수 정 안	
제2종	일시적 다량오물	톤	당	3,200	3,070	
제 3 종	1 등 급 은행,기업체(공장 제조업),창고,병원 공장,극장,예식장, 도매시장 및 이와 유사한 업소	660㎡ 초과	165㎡ 마다	1,350	1,350	
		건물면적	660㎡ 이상	9,150	9,150	
		"	660㎡ 미만	7,400	7,400	
		"	495㎡ 미만	6,050	6,050	
		"	330㎡ 미만	4,450	4,450	
		"	165㎡ 미만	3,350	3,350	
		"	99㎡ 미만	2,650	2,650	
	2 등 급 관공서,학교,공공 시설,교회,후생시 설,공공조합 및 이와 유사한 업소	660㎡ 초과	165㎡ 마다	1,350	940	
		건물면적	660㎡ 이상	4,550	4,500	
		"	660㎡ 미만	3,900	3,880	
		"	330㎡ 미만	3,000	2,940	
		"	165㎡ 미만	1,800	1,780	
	3 등 급 의료업소,식품접객 업소,숙박업소,유 장,욕탕,이·미용 소,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업소	330㎡ 초과	165㎡ 마다	1,350	960	
		건물면적	330㎡ 이상	5,950	5,560	
		"	330㎡ 미만	5,150	4,800	
		"	165㎡ 미만	3,900	3,640	
		"	99㎡ 미만	3,200	2,990	
		"	66㎡ 미만	2,650	2,460	
		"	33㎡ 미만	1,700	1,600	
		"	16.5㎡ 미만	900	850	
	4 등 급	49.5㎡ 초과	16.5㎡ 마다	350	320	
		건물면적	49.5㎡ 이상	3,250	2,860	
		"	49.5㎡ 미만	2,100	1,900	

(단위: 원)

종별및 등급		부과대상	부과기준	수거요금		비고
			건물면적 (㎡)	개정안	수정안	
제 3 종	4 등급	점포(시장점포및 노점포함) 백화점,슈퍼마켓, 연쇄점(단,노점 은 부지면적)	건물면적 33㎡ 미만	1,450	1,270	
			" 16.5㎡ 미만	1,150	1,060	
			" 9.9㎡ 미만	700	630	
			" 6.6㎡ 미만	600	530	
	5 등급	세차장,주차장,주 유소,실외체육시설 (테니스장,골프연 습장포함),하차장 고물수집장,브릭 공장및 이와 유사한 업소	660㎡ 초과 330㎡ 마다	1,050	950	
			건물면적 660㎡ 이상	6,800	6,570	
			" 660㎡ 미만	5,050	4,870	
			" 330㎡ 미만	2,500	2,440	
			" 165㎡ 미만	1,300	1,270	
제 4 종		공동주택(아파트, 다세대주택,연립 주택등)	건물면적 66㎡ 미만 (20평 미만)	5,500	5,500	매년인건 비상승,작업여건 에 따라 20 % 범위내 에서쌍방 합의에의 하여가산 적용할수 있다. (신설)
			건물면적 66㎡ 이상 (20평 이상)	5,800	5,800	
			건물면적 66㎡ 이상 (30평 이상)	6,200	6,200	
			건물면적 132㎡ 이상 (40평 이상)	6,500	6,500	
		일반가정	재산세 100,000원 이상	380	350	
			80,000 ~ 100,000원	370	340	
			60,000 ~ 80,000원	360	330	
			50,000 ~ 60,000원	350	320	
			40,000 ~ 50,000원	340	310	
			30,000 ~ 40,000원	310	290	
			20,000 ~ 30,000원	300	280	
			10,000 ~ 20,000원	290	270	
			5,000 ~ 10,000원	150	140	
			2,500 ~ 5,000원	130	120	
			2,500원 미만	100	100	
			주민등록상 인구 1인	100	80	

(단위 : 원)

종별및 등 급	부 과 대 상	부 과 기 준	수 거 요 금		비 고
		건 물 면 적 (㎡)	개 정 안	수 정 안	
제 5 종	냉장고,에어콘,세탁기,대형가구(장농,케비넷,자전거쇼파,오락기,이와 유사한대형폐기물	1 개 당	3,000	3,000	사용주가운반처리비용의 1/2로 한다. (신설)
	T.V,전자렌지,각종곤로,선풍기등 각종가전제품류,책상의자,싱크대,쌀통등 중형폐기물	1 개 당	2,000	2,000	운반처리주1회로 한다. (신설) 사용가능제품은처리비용의 1/2을가산한다.
	문짝,보통의자등 소형폐기물	1 개 당	2,000	2,000	(신설)

주) 1. 재산세액은 건물분 재산세액임.

다만, 폐기물 수거료 부과 당시 재산세액이 없을시는 전기분 부과당시 "과표" 에 의거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에 부과한다.

2. 제1종, 제2종은 수거료액. 제3종, 제4종은 월료액임.

4. 제1종 수거요금중 10원 미만은 이를 질서한다.

제 14 회 구미시의회 (임시회) 집회결과

건 명	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(안) 의결의건				
집 회 기 간	1992. 4. 6 (1일간)				
의 결 일 시	1992. 4. 6	재 적 의 원	22 명	출 석 의 원	21 명
의 결 사 항 ○ 의결결과 : 원안대로 의결함 첨 부 :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(안) 1부. 끝 *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 1992 년 4 월 9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					
의 결 시 찬 반 표 시	찬 성	19 명	반 대	기 권	1 명

구미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(안)

구미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당해지방의회의 위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한다"를
"3인 이내로 한다"로 한다.

제3조중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

다만,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.

제3조중 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
제4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장의
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.

③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
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

제13조중 "별표2"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"별표2" 중 "20,000원"을 "30,000원"으로 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14 회 구미시의회 (임시회) 집회결과

건 명	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(안) 의결의 건				
집 회 기 간	1992. 4. 6 (1일간)				
의 결 일 시	1992. 4. 6	재 적 의 원	22 명	출 석 의 원	21 명
의 결 사 항 ○ 의결결과 : 원안대로 의결함 첨 부 :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(안) 1부. 끝. *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 1992 년 4 월 9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					
의 결 시 찬 반 표 시	찬 성	19	반 대		기 권 1 명

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(안)

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과 10~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시본청의 각 국장, 기획담당관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제3조 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)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.

①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

②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③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④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 (회의)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,

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안건배부)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

다만,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7조 (위원의 실비변상)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.

제8조 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14 회 구미시의회 (임시회) 집회결과

건 명	구미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(안) 의결의 건				
집 회 기 간	1992. 4. 6 (1일간)				
의 결 일 시	1992. 4. 6	재 적 의 원	22 명	출 석 의 원	21 명
의 결 사 항 ○ 의결결과 : 원안대로 의결함 첨 부 :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(안) 1부. 끝 *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음 1992 년 4 월 9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					
의 결 시 찬 반 표 시	찬 성	19 명	반 대		기 권 1 명

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

회계명 : 일반회계

1992년도 관리계획총괄표

(단위 : 만, 천원)

구	분	당			변			합			비고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 (추가)	건수	수량	금액	
취	계	3 2	334.00 297.01	109,070 3,204				3 2	334.00 297.01	109,070 3,204	
	1.매입	3 2	334.00 297.01	109,070 3,204				3 2	334.00 297.01	109,070 3,204	
	2.교환으로취득										
	3.기타취득										
취	계	28	9,787	293,360	33	5,922	592,200	61	15,709	885,560	
	4.매각	5	1,202	210,860	33	5,922	592,200	38	7,124	803,060	
	5.양여	23	8,585	82,500				23	8,585	82,500	
	6.교환으로처분										

회계명: 일 반 회 계

1992년도매각대상재산목록

(단위: ₩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매각대상 수량	과표또는 평가액	매각시기	매 각 사유	매수회망자 주소·성명	비 고
	지 목	소 재 지	입단의수						
1	하천	구미시 사곡동 603-76	(3,308) 145	145	14,500	3/4	원시 사무소 매입비 충당 3 동 부지 확장	구미시 형곡동 184B 김 종 순	
2	"	"	258	258	25,800	"	"	" 사곡동 603-76 김 종 길	
3	"	"	155	155	15,500	"	"	" " 최 오 봉	
4	"	"	163	163	16,300	"	"	" " 차 명 환	
5	"	"	107	107	10,700	"	"	철곡 지천 금오 275 배 호 경	
6	"	"	96	96	9,600	"	"	구미시 사곡동 603-76 이 만 준	
7	"	"	171	171	17,100	"	"	" " 이 장 오	
8	"	"	262	262	26,200	"	"	" " 한 광 오	
9	"	"	183	183	18,300	"	"	" " 최 준 영	
10	"	구미시 사곡동 603-77	(3,678) 334	300	30,000	"	"	" " 603-77 황보용덕	
11	"	"	194	194	19,400	"	"	" " 양 기 봉	
12	"	"	130	130	13,000	"	"	" " 469-2 하 치 준	
13	"	"	134	134	13,400	"	"	" " 광평동 792 김 창 호	

회계명 : 일 반 회 계

1992년도매각대상재산목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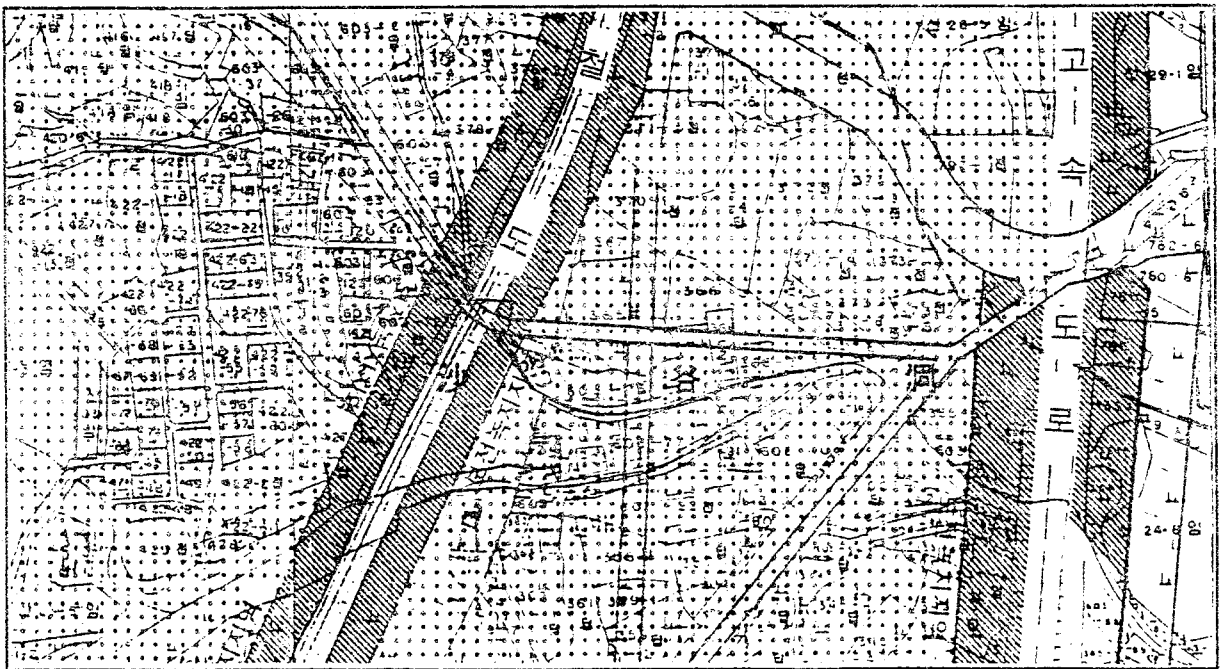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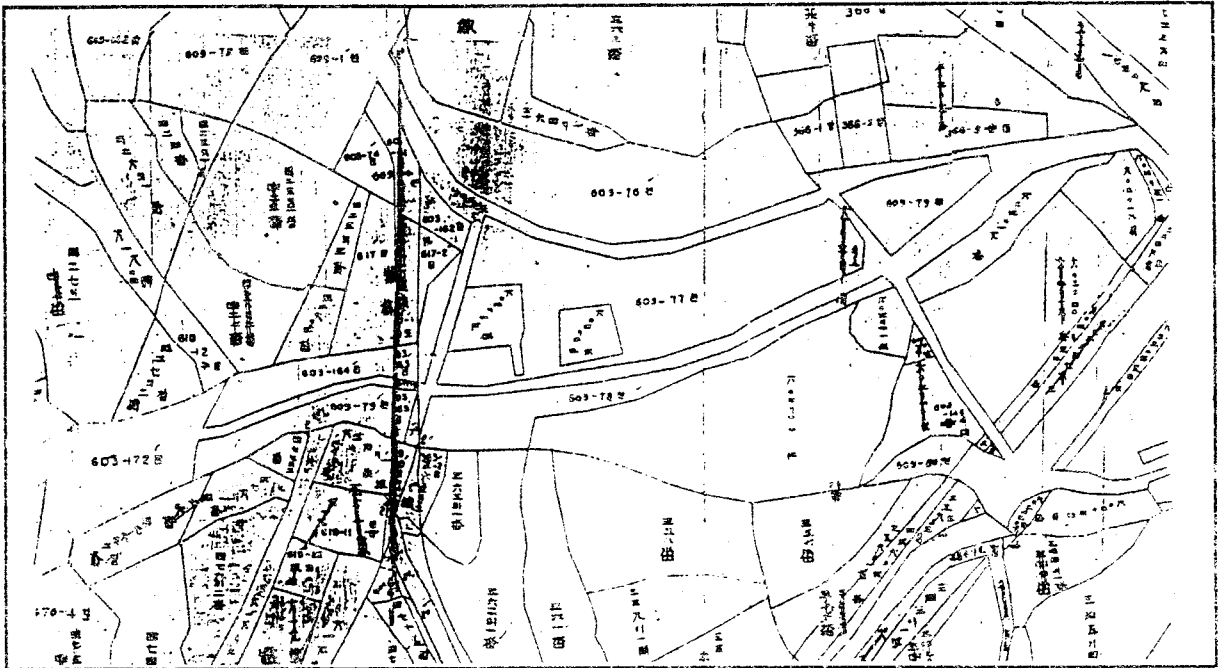
(단위 : m, 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매각대상 수량	과표또는 평가액	매각시기	매 각 사유 원 평 3 동 사무소 부지확장 비	매수희망자 주소·성명	비 고
	지 목	소 재 지	일단의수량						
14	하천	구미시 사곡동 603-77	(3,678) 128	128	12,800	3/4		구미시 사곡동 603-77 이 경 규	
15	"	"	150	150	15,000	"	"	" 619-11 김 도 경	
16	"	"	93	93	9,300	"	"	" 603-77 박 재 철	
17	"	"	92	92	9,200	"	"	" " 서 윤 표	
18	"	"	211	211	21,100	"	"	" " 박 태 읍	
19	"	"	378	300	30,000	"	"	" " 515-3 경 규 민	
20	"	"	130	130	13,000	"	"	" " 603-77 민 청 남	
21	"	"	155	155	15,500	"	"	포항 상도 66-32 노 경 순	
22	"	"	148	148	14,800	"	"	구미시 사곡동 603-77 여 영 동	
23	"	"	115	115	11,500	"	"	" " 박 동 조	
24	"	"	443	300	30,000	"	"	" " 김 광 수	
25	"	"	193	193	19,300	"	"	" " 문 순 곤	
26	"	"	203	203	20,300	"	"	" " 신 정 명	

매 각 대 상 토 지

재산의 표시

구미시 사곡동 603-76 번지 외 필 m²
603-77
603-78
503-79



제 14 회 구미시의회 (임시회) 집회결과

건 명	구미시 도시계획변경 및 학교시설 결정(안) 의견의 건				
집 회 기 간	1992. 4. 6 (1일간)				
의 결 일 시	1992. 4. 6	재 적 의 원	22 명	출 석 의 원	21 명
의 건 사 항 ○ 의견내용 : 별 첨 첨 부 : 1992 년 4 월 9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					

龜尾都市計劃公園變更 및 學校施設決定意見

- 龜尾都市計劃公園變更 및 學校施設決定의 件은 新坪地域 4萬여名 住民이 密集하고 있으며, 新坪·新基·飛山國民學校 등 3個 國民學校가 있으나 中·高(金烏工高 除外)校는 全無한 形편으로 飛山 都市近隣公園 內的 都市公園을 縮小하여 假稱 金烏女子中學校를 設置하는 것은 晚時之歎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, 荊谷地區는 當初 都市計劃 人口가 35千名으로 計劃 하였으나 急激한 人口 增加를 예측하지 못하여 既存 國民學校 2, 中學校 2個校 施設로서는 앞으로 人口가 60千名으로 增加를 예상하면 受容能力에 限界가 있으므로 이 또한 都市計劃 樹立부터 차질이 되었으며 이의 修正은 妥當한 것으로 思料되며, 都市計劃施設 決定 과정에서는 議會에서 提出한 各 區劃整理事業地區內的 中·高等學校 設置를 檢討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, 新坪地區 中學校 1個校, 荊谷地區 國民學校·中學校 各 1個校 設立에 대한 都市計劃公園變更 및 學校施設 決定의 件에 對하여는 龜尾市 議會 議員 臨時會 出席 全員은 贊成으로 審議 議決한다.